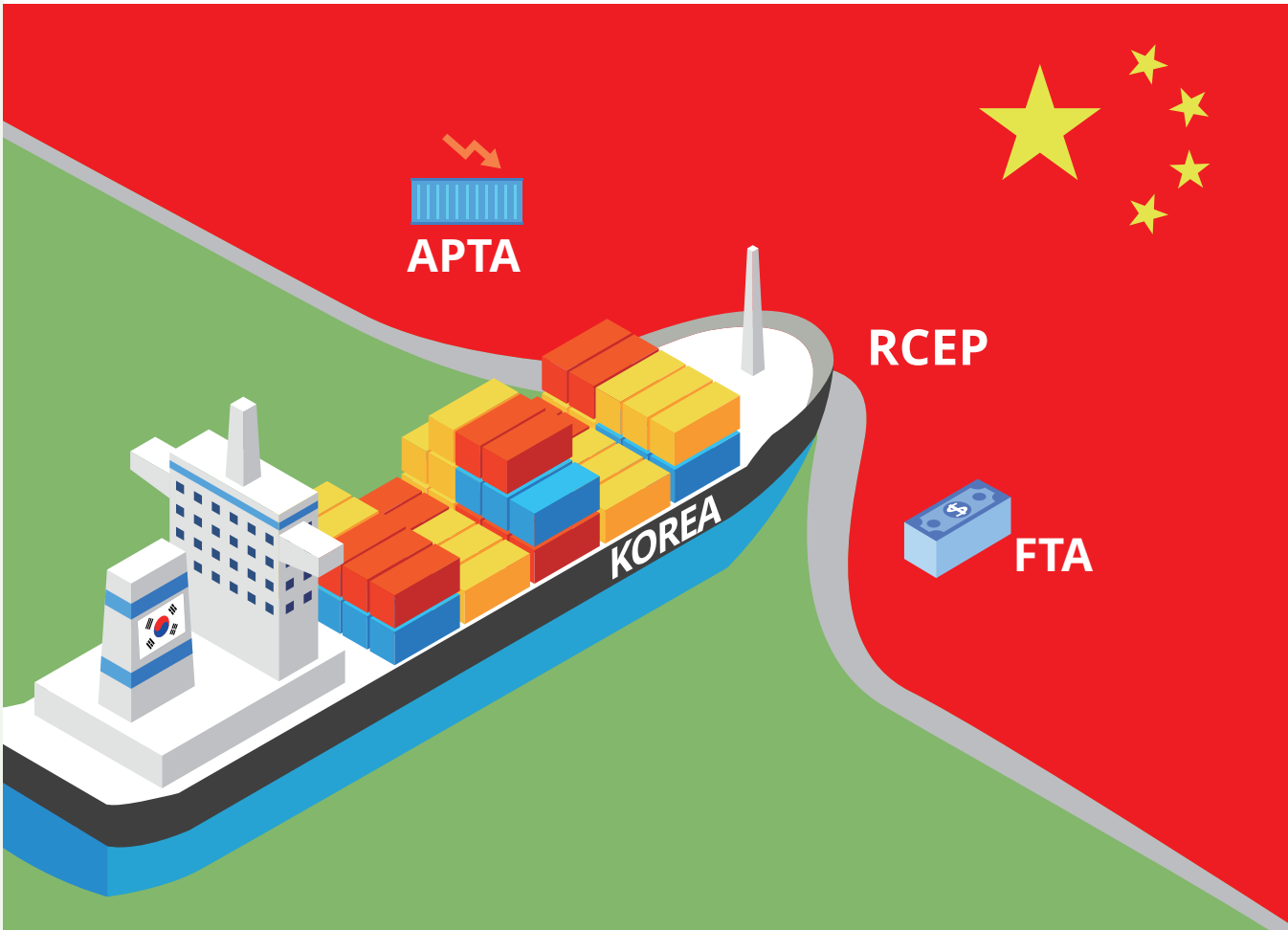


# 04

## FTA ANALYSIS

중국의 대(對)한 주요 수입 품목의 세율 비교·분석





## 중국의 대(對)한 주요 수입 품목의 세율 비교·분석



오유진  
한국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1975년 방콕협정으로부터 시작된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Asia -Pacific Trade Agreement)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 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협상이다. 협상 초기에는 회원국 간 경제 규모 차이로 인하여 관세 양허 품목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나, 제4라운드에서는 무역 원형화,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어 활용의 폭이 넓어졌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하여 5개국(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APTA에 이어 한-중 FTA와 RCEP 까지 발효되며 본격 1국 다(多)협정 국가로 거듭났다. 그 결과 현재 중국으로 수출 시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특혜 세율은 세 종류(APTA, 한-중 FTA, RCEP)로 품목마다 적용되는 특혜 세율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대(對)중 2023년 주요 수출 품목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2024년 중국 APTA 세율과 FTA 협정 세율 비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특혜 세율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1국 다협정 적용 가능 국가

발효			
국가	특혜협정	국가	특혜협정
중국	APTA, 한-중 FTA, RCEP	베트남	한-ASEAN FTA, 한-베트남 FTA, RCEP
인도	APTA, 한-인도 CEPA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한-인도네시아 CEPA, RCEP
뉴질랜드	한-뉴질랜드 FTA, RCEP	캄보디아	한-ASEAN FTA, 한-캄보디아 FTA, RCEP
ASEAN(6개국 <sup>1)</sup> )	한-ASEAN FTA, RCEP	싱가포르	한-ASEAN FTA, 한-싱가포르 FTA, RCEP

주 1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한-필리핀 FTA 타결, 2021.10.26.)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일반 세율, 최혜국(MFN) 관세율, 잠정 세율, 특혜 세율, 협정 세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관세의 적용은 탄력 관세(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등) → 협정 세율(FTA 관세, APTA 관세 등) → 할당 관세 → 특혜 세율 → 잠정 세율 → 일반 세율의 순으로 부과된다.



잠정 세율과 특혜 세율 및 협정 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단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잠정 세율이 기본 세율 보다 높더라도 기본 세율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표 2] 중국의 주요 수입 관세율**

종류	범위
협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규정되는 우대 관세율로, 일반적으로 최혜국 세율보다 낮고 협정이나 조약의 유효 기간 내 조약 동 의 없이는 세율의 자동 갱신이나 폐지가 불가능함</li> <li>•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 물품에 적용하는 FTA 세율 및 APTA 협정에 따라 APT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li> <li>• 대한민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협정 관세율</li> </ul>
할당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당 관세는 수입 물품의 일정 할당량(Quota)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쿼터 내의 수량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부과하고 쿼터외의 수량에 대해서 고세율을 부과하는 탄력 관세의 일종임</li> </ul>
특혜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국가 및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수 관세로서 최혜국 원칙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혜국 원칙을 근거로 특혜 세율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음</li> <li>• APTA 2개국(라오스, 방글라데시)과 아세안 4개국(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최빈국 40개국이 포함됨</li> </ul>
잠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임시'로 적용하는 관세율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 중 잠정 세율이 있는 경우 MFN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li> </ul>
최혜국(MFN)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 대우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li> </ul>
일반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율, 협정 관세율 또는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li> </ul>

자료: 중국해관총서, 중국 재정부 등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 중국의 대(對)한 주요 수입 품목의 APTA vs FTA (RCEP 포함)

아래 [표 3]은 2023년 기준 중국의 대(對)한 수입 금액 상위 100대 품목(HS 8단 위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품목 일부를 선별(31개 품목)하여 나열한 것이다.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은 1개, FTA(RCEP 포함) 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은 16개로 나타났으며, APTA와 FTA 적용 세율이 동일한 품목은 2개, 잠정 세율 적용 품목은 2개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품목(HS 8단위) 기준 잠정 세율 등 두 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품목은 10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중국의 대(對)한 주요 수입 품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2023년 기준 중국의 대(對)한 수입 금액 상위 100대 품목 중 분석 대상 품목 <sup>1)</sup>							
APTA (1개)				FTA(RCEP 포함) (16개)			
1	22029900			1	19023030	9	39074000
APTA=FTA (2개)				2	27132000	10	39201010
1	39014090	2	84081000	3	32049090	11	39206200
잠정세율 (2개)				4	32089090	12	74102110
1	27101220	2	74031111	5	39013000	13	76061259
동일 품목 내 세율 확인 필요 품목 (10개)				6	39023010	14	84099910
1	21069090	6	39199090	7	39033090	15	84818040
2	35069190	7	39269090	8	39069090	16	85021320
3	38249999	8	74040000				
4	39011000	9	85076000				
5	39012000	10	85371090				

주 1: MFN 0%로 협정 세율 활용 실익이 없는 품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APTA, FTA 등 2가지 이상의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함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다음의 [표 4]는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1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중 FTA를 적용했을 때보다 13.3%p의 세율 차이를 보여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APTA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중국 HS코드	품목명	MFN	협정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천 불)
			APTA	한-중 FTA	RCEP	
22029900	Other	5	<b>4.2</b>	17.5	-	184,089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의 [표 5]는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FTA(RCEP 포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16개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APTA를 적용했을 때보다 0.1%p~4.6%p의 세율 차이를 보여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FTA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중국 HS코드	품목명	MFN	협정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천 불)
			한-중 FTA	RCEP	APTA	
19023030	Instant or quick-cooking noodles	10	<b>7.5</b>	-	8.7	214,594
27132000	Asphalt	8	<b>2.6</b>	5.6	5.6	731,702
32049090	Other	6.5	<b>0</b>	<b>0</b>	4.2	207,236
32089090	Other	10	<b>5</b>	8.5	9	188,774
39013000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6.5	<b>5.9</b>	-	6	1,023,781
39023010	Ethylene-propylene copolymer (ethylene-propylene rubber)	6.5	<b>2.1</b>	4.6	6	242,221
39033090	Other	6.5	<b>3.2</b>	5.5	6	348,091
39069090	Other	6.5	<b>0</b>	4.6	6	579,968
39074000	Polycarbonate	6.5	<b>2.1</b>	4.6	6.1	455,663
39201010 <sup>1)</sup>	Battery separator made of polymer of ethylene	6.5△3	<b>0</b>	4.6	4.2	236,015
39206200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6.5	<b>2.1</b>	4.6	4.6	561,728

중국 HS코드	품목명	MFN	협정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천 불)
			한-중 FTA	RCEP	APTA	
74102110	Copper-clad board used to print circuit	4	0	0	2.6	221,693
76061259	Other	6	2	4.2	3.9	551,356
84099910	For marine propulsion engines	5	1.6	3.5	3.3	202,906
84818040 <sup>1)</sup>	Other valves	7△5,1	0	0	4.6	234,979
85021320	Of an output exceeding 2 MVA	10	5	8.5	7	192,218

주 1: 잠정 세율 적용 품목이나 FTA(RCEP) 활용 실적이 있는 품목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 6]은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APTA와 한-중 FTA 적용 세율이 동일한 품목 2개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APTA와 한-중 FTA의 특혜 관세율은 동일하다.

[표 6] APTA와 FTA가 동일한 세율인 경우

중국 HS코드	품목명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천 불)
		MFN	APTA=FTA	
39014090	Other	6.5	4.2	773,982
84081000	Marine propulsion engines	5.0	2.5	581,819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 7]은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2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HS 2710.12-20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APTA나 FTA를 적용했을 때보다 잠정 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2%p~5.4%p의 세율 차이를 보여 보다 유리하며, HS 7403.11-11은 잠정 세율과 FTA 특혜 관세율이 동일하다.

**[표 7] 잠정 세율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중국 HS코드	HS 8단위 품목명	MFN	잠정 세율	협정 적용 세율(%)			20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천 불)
				APTA	한-중 FTA	RCEP	
27101220	Naphtha	6	0	5.4	2	4.2	1,435,981
74031111	Containing at least 99.9935% of copper by weight	2	0	1	0	0	1,385,482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작성

다음 [표 8]<sup>1)</sup>은 [표 3]에서 나열한 품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관세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품목을 보여 준다. 품명에 기재된 특정 상품 범위의 품목에 한정하여 MFN 과 잠정 세율이 구분되어 적용된다.

동일한 HS 8단위지만 상품의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해지는 품목이므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FTA C/O 발급 대상 품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8-1] HS 8단위 기준 2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품목(세율)**

구분	중국 HS코드	ex <sup>1)</sup>	MFN	잠정	APTA	한-중 FTA	RCEP	23년 대(對)한 수입 금액
FTA/MFN	35069190		10		7	0	7	207,649
			0 <sup>2)</sup>		7	0	7	
	39199090		6.5		4.6	2.1	4.6	479,608
			0 <sup>2)</sup>		4.6	2.1	4.6	
APTA/잠정	21069090		12		11	18.4	20	224,595
		ex	12	0	11	18.4	20	

1) 동일 품목에 대하여 [표 8-1]은 세율 위주로, [표 8-2]는 품목명 위주로 작성함



구분	중국 HS코드	ex <sup>1)</sup>	MFN	잠정	APTA	한-중 FTA	RCEP	23년 대(對) 한 수입 금액	
FTA/잠정	85076000		10		<b>8</b>	9.6	-	320,417	
		ex	10	<b>1</b>	8	9.6	-		
	38249999		6.5		4.2	<b>2.1</b>	4.6	1,145,934	
		ex	6.5	3	4.2	<b>2.1</b>	4.6		
		ex	6.5	<b>0</b>	4.2	2.1	4.6		
	39011000		6.5		6	5.9	-	275,797	
		ex	6.5	<b>3</b>	6	5.9	-		
	39012000		6.5		6	<b>5.9</b>	-	812,330	
		ex	6.5	<b>3</b>	6	5.9	-		
	39269090		10		6.5	<b>0</b>	7	185,156	
		ex	10	<b>0</b>	6.5	0	7		
	74040000		1.5		0.8	<b>0</b>	<b>0</b>	584,011	
		ex	1.5	<b>0</b>	0.8	0	0		
	85371090			8		4	<b>2.8</b>	6.7	182,413
		ex		8	4	4	<b>2.8</b>	6.7	
		ex		8	<b>1</b>	4	2.8	6.7	

주 1 : ex 품목은 HS 8단위 이하 특정 상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의미함

주 2 : ITA 세율 적용 품목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특히 HS 3824.99-99와 HS 8537.10-90은 특정 상품의 범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잠정 세율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HS 3824.99-9999는 기타의 화학공업 생산품으로 8단위 이하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상품이 5개로 세분화<sup>2)</sup>되어 있다.

즉 상품의 범위에 따라 적용받는 잠정 세율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할 시 상품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2) 잠정 세율 0% 적용 품목 : ①폴리아미드 생산용 발효액(중략), ②골드 카본(Gold carbon) ③티타늄 슬래그(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잠정 세율 3% 적용 품목 : ①산화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혼합물, ②니켈 코발트 수산화물



[표 8-2] HS 8단위 기준 2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품목(품명)

구분	중국 HS	ex	품명	비고
FTA/MFN	35069190		Other	조제 접착제
			Optically clear film adhesives and light-curing liquid adhesives used exclusively or primarily in display or touch screen manufacturing1)	
	39199090		Other	접착성 슈트·테이프
			Self-adhesive circular polishing pad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 wafer1)	
APTA/잠정	21069090		Other	기타 조제 식료품
		ex	Non-dairy-based infant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non-dairy-base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85076000		Lithium ion	리튬이온 축전지
ex		Lithium-ion battery for aircraft		
FTA/잠정	38249999		Other	기타 화학공업 생산물
		ex	Fermentation broth used to produce polyamide (containing amino acids, organic acids, organic amines, organic alcohols, nucleotides, polysaccharides, etc.)	
			Gold carbon	
			High titanium slag (containing more than 70% of titanium dioxide by weight)	
	ex	Mixtures containing 50% or more zinc oxide by weight		
		Crude nickel cobalt hydroxide		
39011000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less than 0.94	폴리에틸렌	
	ex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less than 0.94, in primary forms (CIF)USD3800/ ton)		

구분	중국 HS	ex	품명	비고
FTA/잠정	39012000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0.94 or more	폴리에틸렌
		ex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0.94 or more, in primary forms (CIF)USD3800/ ton	
	39269090		Other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
		ex	Polyurethane condom	
	74040000		Copper waste and scrap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ex	Recycled brass-copper raw materials	
	85371090		Other	전기제어용 보드·패널
		ex	Control cabinet (electric cabinet) for elevators and circuit board for control cabinet	
		ex	Aircraft control module(for the circuit with its voltage≤1000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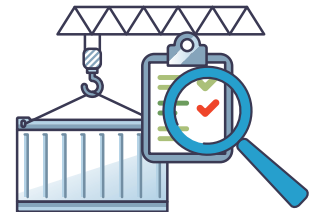
주 1: ITA 세율 적용 품목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데이터,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23-12호 (2024년도 관세율표 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이상으로 대(對)중 2023년 주요 수출 품목 중 APTA 세율과 FTA 협정 세율 등의 비교를 통해 활용 가능한 특혜 세율을 분석하여 보았다.

## 맺음말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수교를 체결한 이후 APTA와 한-중 FTA, 그리고 RCEP까지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으로 수출 시 다수의 품목이 MFN보다 낮은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잠정 세율 등을 통해 수입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입 관세율을 설정하여 복잡한 세율 적용 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의 산업 동향과 정책 기조 등에 따라 변동되는 관세율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